

[부정경쟁분쟁]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의 보충성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2015922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안에서 기술이전회사 원고의 구 부경법 제2조 제1항 (차)목의 부정 경쟁행위 관련 주장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차)목의 판단기준에 대한 법리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개정 전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이 정한 행위 유형만을 부정경쟁행위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이른바 '한정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 등에 따라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부정경쟁행위, 즉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

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여(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 등 참조), 경쟁자들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하는 데 기초가 되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없앴으로써,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과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 목이 신설된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과 등 (이하 '보호주장 성과 등'이라고 한다)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살펴본 다음,

②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등 제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규정을 비롯하여 시장의 경쟁과 거래질서를 규율하는 전체 법체계 내에서 보호주장 성과 등을 이용함으로써 침해되었다는 경제적 이익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위와 같은 전체 법체계의 해석 결과 보호주장 성과 등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해 있는 것이어서**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더라도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지를 독자적으로 규명해 보고,

또한 ③ 그러한 침해가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관행과 질서 체계에 의할 때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이라고 평가되는 경쟁자의 행위에서 비롯되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보호주장 성과 등이, 시장의 경쟁과 거래질서를 규율하는 전체 법체계에 의할 때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적 보호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위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신설 전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들의 체계 등에서 각각의 특유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그러한 법률들에 규정된 권리 등에 의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었지만 이는 단지 **법적 보호의 공백**으로서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규정 등을 해석·적용해 보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서 법적 보호가 주어져야 하는 성질의 것인지를 규명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

단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건설하면서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고, 이와 같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신의칙상 영업비밀 유지의무 위반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가 ITB 도면을 EPC 업체들에게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보면, 그것이 **공개**행위로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보았는데, 이러한 공개행위를 두고 피고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기술법무, 저작권, 영업비밀, 계약분쟁, 손해배상,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